

서울동부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1573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6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재철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10.07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과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유정미	201호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07.16.~	220,000,000			2020.07.16.	2020.06.03.	
	201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	2020.07.16.	미상	
	201호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0.07.16.~	220,000,000			2020.07.16.	2020.06.03.	2025.7.2.
주택도 시보증 공사	201호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 자	2020.07.16.~ 2024.08.14.	200,000,000			2020.07.16.	2020.06.03.	2025.6.4.
<비고> 유정미: 보증금 200,000,000원의 확정일자 2020.06.03., 증액 20,000,000원의 확정일자 2022.07.13. 주택도시보증공사: 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 유정미의 임차보증금 중 200,000,000원 대위변제, 우선변제권 승계.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.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024.07.18.접수 제112387호로 경료된 을구 8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없음 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-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열람용

